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 법정교육 법령 제·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마련
-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탄력성 부여 관련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 채용 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해당자 규정
- 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기피 기준 등 마련
- 기간제교원 채용 시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신체검사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2022.12.22.) 이후 후속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후속지원 계획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법정교육과 학교교육과정의 중복을 예방하는 등 학교가 보다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2023년 4월 19일부터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2022년 기준 18개교)의 경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학부모·교원·지역위원 구성 비율 요건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2022.10.18.)으로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먼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시험 명칭인 ‘경력경쟁채용’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정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 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은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을 기존의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일반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이미 5년까지 확대 적용받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으로 채용 기간이 짧은 기간제교원이 신규 채용 때마다 반복해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등)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사 운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총괄>	책임교육정책관 교육과정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한승	(044-203-6715)
		담당자	교육연구사	강병혁	(044-203-6717)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985)
		담당자	사무관	김병윤	(044-203-6497)
	교육연구관		조정민	(044-203-6489)	
협조 부서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홍순	(044-203-6930)
		담당자	사무관	박수민	(044-203-6938)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3-670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과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연	(02-2100-3350)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현석	(02-2100-3351)

**붙임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법정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각종학교 중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27.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횡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63조제1항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li> <li><u>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u></li> <li><u>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u>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u></p>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 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  
-----  
-----  
-----  
-----  
-----  
-----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6717

**붙임 2****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구분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교육전문직원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학교원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4. ~ 6. 17., 11. 4. ~ 11. 14.,  
2023. 1. 26.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29조의2제7항”을 “법 제29조의2제8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3항”을 “법 제11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일치여부등”을 “일치 여부,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으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 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채용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2가목 후단 중 “특별채용”을 각각 “채용”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각각 “채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 중 다음 각 호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의3의 제목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를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를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로, “특별채용 심사”를

“채용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채용 심사”를 “채용 심사”로, “특별채용위원회”를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채용위원회”를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로 한다.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채용(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채용 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의5제2항 중 “법 제29조의2제5항”을 “법 제29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6제1항 중 “법 제29조의2제6항”을 “법 제29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4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을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용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4장의2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질병휴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

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 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의4의 제목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을 “본인 외에 돌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 수 밖에”를 “돌볼 수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간

호할 수 밖에”를 “돌볼 수밖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회피) ①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채용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

⑥ (생략)

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⑧ (생략)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생략)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생략)

4.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신설>

-----  
-----  
--.

나.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중 다음 각 호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  
채용-----  
----- 채용-----  
-----

2. -----  
채용 ----- 채용

③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0  
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  
법」 또는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  
여 임용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  
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  
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  
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  
이 있는 사람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원을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  
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  
직원으로서 「유아교육  
법」 제22조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  
른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의3(교원특별채용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특별채용할 때 대학인사위원회  
의 동의에 앞서 특별채용 대상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채용위원회는 해당 대학

제9조의3(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  
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  
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채  
용(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  
용등”이라 한다)할 때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채용 대  
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 중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채용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생

-----  
-----  
-----  
-----.

③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채용 심사 -----  
-----  
-----.

④ 채용 심사 -----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  
-----.

⑤ -----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

⑥ -----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현

략)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 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

③ (생략)

<신설>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③ (생략)

④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

행과 같음)

② -----  
----- 법 제29조의2제6항-----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 법 제29조의2제7항-----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⑤ ~ ⑨ (생략)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 (생략)

<신설>

제3호에 따라 채용된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

----- 제18조의2-----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19조(질병휴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의4(가사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  
-----본인 외에 돌볼 -----  
-----  
-----  
-----  
-----  
-----  
-----

1. ----- 돌보는 -----  
-----  
-----  
-----  
-----  
----- 돌볼 수밖에 -----  
-----.

2. ----- 돌보는 -----  
-----  
-----  
-----.

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돌볼 수밖에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97